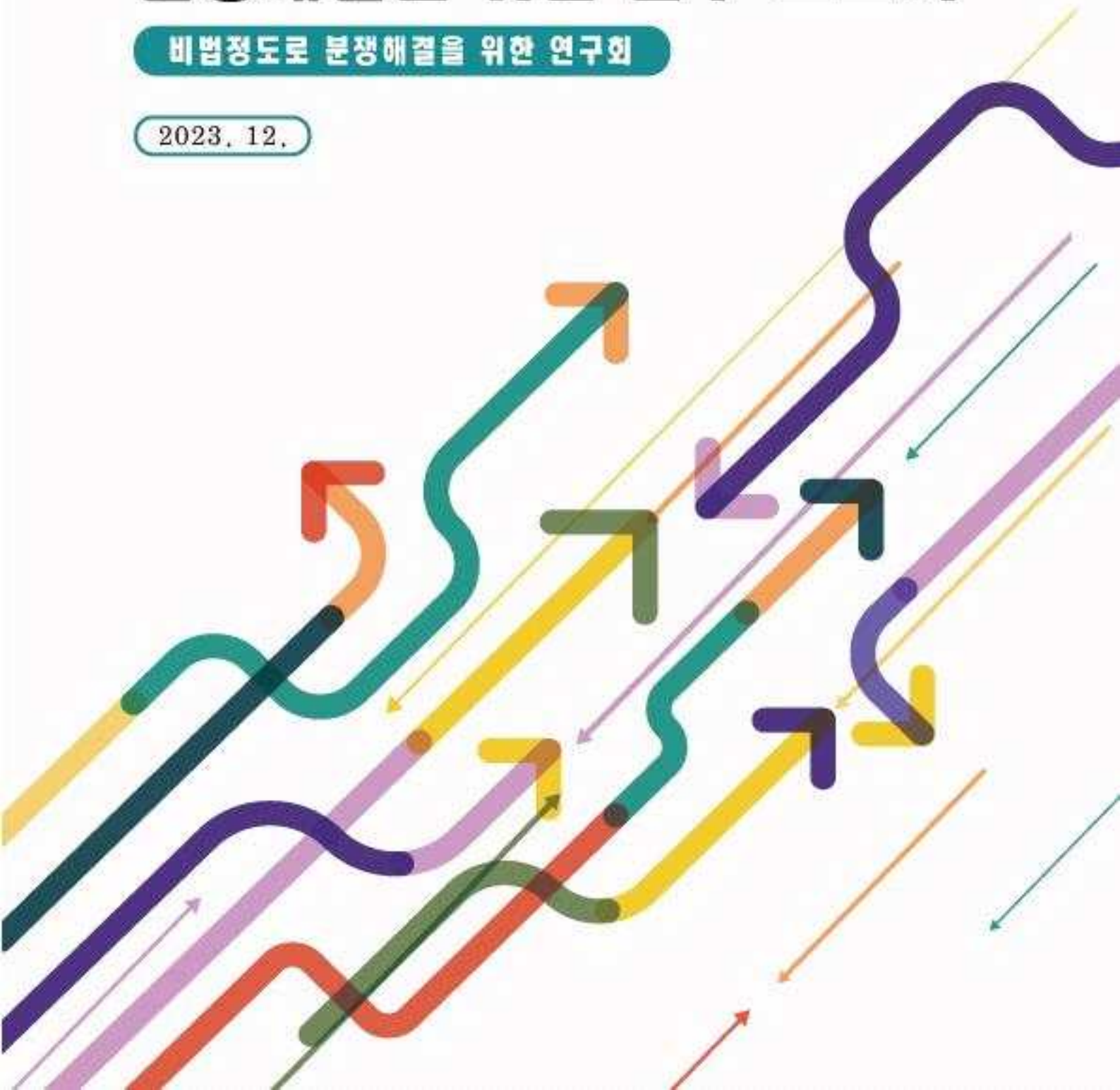


울주군의회 비법정도로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 보고서

비법정도로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회

2023. 12.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개념

제1절 법정도로의 개념 및 유형	6
1. 법정도로의 개념	6
2. 법정도로의 유형	7
제2절 비법정도로의 개념	10
1. 비법정도로의 개념	10
2. 국내 비법정도로 현황	11

제3장 비법정도로 현황 및 소송 현황

제1절 비법정도로 현황	12
--------------------	----

제2절 비법정도로 민원 현황	16
-----------------------	----

제4장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사례 및 관련 조례

제1절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사례	19
--------------------------	----

1. 경기도 양평군 사유지 보상	19
2. 전라북도 장수군 사유지 매입	20
3. 강원도 인제군 사유지 매입	20
4.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	21
5. 국민권익위원회 사유지 보상 의결	21
6. 경기도 남양주시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바로처리’	22

제2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도로 관련 조례	28
------------------------------	----

1. 강원도 건축 조례	28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건축 조례	33
3. 충청도 건축 조례	39
4. 경상도 건축 조례	48
5. 전라도 건축 조례	58

제3절 비법정도로 분쟁 사례	67
-----------------------	----

제4절 세종특별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사례 ...	73
--	----

1. 비법정도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	73
2.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방안	75

3. 향후 정비하는 비법정도로 분쟁 발생 방지방안	79
-----------------------------------	----

제5장 비법정도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참고문헌]	90
--------------	----

[붙임]

[부 록 1] 남양주시 “바로처리”	91
[부 록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을안길 편입도로 보상사업 벤치마킹	96
[부 록 3] 5분 자유 발언	101
[부 록 4] 울주군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09

표 목차

[표 1] 국내 비법정도로 구분 및 내용	11
[표 2] 지자체 제공 도로 현황	14
[표 3] 비법정도로 면적 추정치	15
[표 4] 주요 도시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 수(2019~2020년)	17
[표 5]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 세부 내용	18
[표 6] 경기도 가평군 현황도로 보상 우선순위	19
[표 7] 강원도 인제군 비법정도로 신청대상	21
[표 8] 강원도 지역 건축 조례	28
[표 9] 수도권 지역 건축 조례	33
[표 10] 충청도 지역 건축 조례	39
[표 11] 경상도 지역 건축 조례	48
[표 12] 전라도 지역 건축 조례	58
[표 13] 비법정도로 분쟁 사례	67

그림 목차

[그림 1] 16개 바로처리 협업체계 구축	25
[그림 2] 비법정도로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대 운영	25
[그림 3]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추진	26
[그림 4] 마을안길 통행불편 해소(통학로 확보 등)	26
[그림 5] 사유지 편입 고질적인 통행불편 해소	27
[그림 6] 토지승낙서 표준(안)	80
[그림 7] 토지승낙서 표준(안), 법률자문 반영	8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 법정도로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주무관청에서 도로 위계별로 유지·보수·관리 수행
 - 국내 법정도로는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적용을 받으며 도로로써의 지위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 도로관리 전문성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어려움 내포

- 비법정도로는 오랜 기간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예전부터 사용하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도로
 - 주민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비법정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되고 사유지가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소유자 간 갈등 유발

- 지방분권강화 기조에 맞추어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관리 운영방안 필요
 - 공정하고 정의로운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방안으로 소유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녕과 공공질서 회복
 -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방안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울주군 구현 필요성 대두

2. 연구의 목적

- 이러한 사안은 전국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해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지역 내 비법정도로 분쟁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조례포함)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3년 10월 기준

☐ 공간적 범위

- 울주군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정한 곳

☐ 내용적 범위

☐ 비법정도로의 현황, 문제점 및 관련 민원과 소송

- 전국적으로 산재한 비법정도로의 현황조사
- 비법정도로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점 도출
- 비법정도로 분쟁으로 인한 민원과 판결

☐ 울주군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 울주군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 울주군의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조사

☐ 관련법령, 조례, 판례, 국내외 사례 등 조사 및 분석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소송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및 해외의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비교 분석

☐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대안 및 조례안 제시

- 울주군만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례 발굴을 위한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울주군 특성에 맞는 조례 도출 및 효과 검토

☐ 해결 대안에 따른 영향분석

- 울주군 특성에 맞는 조례 도출 및 효과 검토
- 조례에 의한 예산 소요시 예산 추계

☐ 비법정도로의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

- 지정한 비법정도로 현황자료 분석 및 체계적 관리

☐ 비법정도로 관련 제도의 보완

- 울주군 비법정도로 관련 제도의 분석 및 보완방안 도출

2. 연구 방법

☐ 울주군 기본현황, 정책자료, 시책 추진 현황 등

- 울주군 비법정도로 실태 분석
- 문헌조사, 담당공무원 또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

☐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 법령, 연구내용, 문헌 등 조사/분석

- 타 지방자치단체 분쟁사례, 울주군 조례 발굴 방안 등 연구
- 국내 및 해외사례 연구

□ 비법정도로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 기존 분쟁 해결방안 모색
- 앞으로의 비법정도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발굴
- 마을 안길 보상에 관한 울주군의 적절한 예산안
- 마을 안길 보상에 관한 울주군 조례 제시

제2장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개념

제1절 법정도로의 개념 및 유형

1. 법정도로의 개념

- 법정도로(法定道路)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거나 규정된 도로이고, 비법정도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를 지칭

- 도로에 관한 규정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으며 법정도로라고 해서 모든 법률에 통용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률들을 해석함에 있어 도로의 개념은 그 법률의 입법취지나 규정들의 관계를 살펴 개별적인 정의가 필요

- 법률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이 결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법률에 따른 정식의 도로 설정행위를 거쳐 개설된 도로를 말함

- 도로가 갖추어야 할 형체적 요건과 의사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 도로가 되고 비법정도로는 형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의사적 요소를 결여한 도로임

2. 법정도로의 유형

□ 도로법

- 도로법에서 도로는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사도법

- 사도는 도로법 등 도로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를 총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고시된 도로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건축법

-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서 도로 배치와 규모를 포함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제2절 비법정도로의 개념

1. 비법정도로의 개념

- 비법정도로는 도로 관련법이나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법률적 근거 및 관련 인·허가 없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를 의미함
 - 현황도로, 관습상의 도로, 비법정도로라고도 하는데 일반 대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물적 시설물로써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도로 개설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도로
 -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사유지가 비법정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됨. 그러나 정식의 도로개설행위가 없었으므로 공법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일반적으로 사도(개인도로), 관습상 도로(비법정도로),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농로, 임도가 비법정도로에 해당
 -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임도를 기반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함을 규정
 - 농로는 농지법, 농어촌정비법의 규율 대상이지만 지목이 도로이므로 공중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인정
- 참고로,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근거가 없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래되고 그에 따른 법적 확신이 생기면 관습법이 인정되고, 당초에 통로가 없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여 통로로서의 외관이 완성되어 누가 보더라도 통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통행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관습상의 통행권은 근거가 없다며 파기 환송한 사례

2. 국내 비법정도로 현황

- 국내 비법정도로 구분은 사도, 현황도로, 통행로, 농로, 임도 등으로 구분되고 각 구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국내 비법정도로 구분 및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사도 (私道)	대부분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사적소유 부지를 말하고 대규모 산지 등을 개발하면서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성된 도로
현황도로	소유권이 일부는 사적소유이나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비법정도로 또는 관습법상의 도로
통행로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닌 최소한의 통행로의 개념으로 도로 개설에 따르는 절차 없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이며 단순히 도로나 우마차의 통행만 가능한 골목길, 산책길, 등산로, 오솔길 등
농로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며 규모나 형태에 있어서는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도로라고 볼 수 없으며 농로는 농민이 농지에서 경작에 필요한 도로
임도	산림의 경영, 산림자원의 보호 및 관리, 산림휴양 자원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향상, 산촌진흥, 농촌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 개발 등을 위하여 산림 내에 개설하는 도로

제3장 비법정도로 현황 및 소송 현황

제1절 비법정도로 현황

- 비법정도로는 아직까지 개념 정의 및 법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비법정도로 파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량 관련 데이터 구축이 미비한 실정임
- 국토연구원(2022)에서는 비법정도로의 현황 분석 중 물량 파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 대도시의 도로 및 도시계획 담당자를 통하여 관련 토지면적 등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
 - 2021년 7~9월, 국내 주요 대도시인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의 도로 및 도시계획 담당자를 통하여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토지면적 등을 조사함
 - 지자체 데이터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정의한 비법정도로의 개념에 따라 실제 이용 현황,
- 소유 주체, 법적 근거, 지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비법정도로의 면적 현황을 추정함
 - 그러나 지자체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다수였음
- 따라서 지자체 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법정도로 면적을 추정하였음
 - 실제 이용 현황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토지 소유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소유 주체는 개별공시지가정보 데이터를 사용해, 두 자료를 중첩 분석함
 - 단,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의 경우, 정보제공 목적으로 법적 효력은 부재하며 각 데이터의 수집 시기와 주체가 상이하여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확도

가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

○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비법정도로의 면적 추정에 활용됨

- (1안) 각 지자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하여 비법정도로 면적을 산출함
- (2안)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를 통해 지자체 제공 자료를 보완하여 비법정도로 면적의 추정치를 제시함

○ • (1안) 해당 특·광역시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수집한 지자체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자료 부재, 현황 파악 불가 등을 사유로 미제출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였음

○ 비법정도로에 관한 지자체 제공 자료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전체 도로의 면적(A)에서 국·공유지 도로 면적(B)을 제외한 사유지 도로 면적(C) 중 사유지 법정도로로써 미불용지, 사도법상 사도(私道), 건축법상 도로 등(D)을 제외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지 비법정도로(E) 중에서도 지목상 도로와 비도로(F)로 나누어 구분하였음

○ • 본 연구에서 비법정도로의 개념을 광의인 사유지 비법정도로(E), 협의인 사유지 비법정도로 중 지목상 비도로(F)로 정의한 바에 따라, 지자체별로 비법정도로의 면적에 대한 추정값은 두 개의 값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비법정도로의 광의와 협의는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한 개념으로, 본 연구는 광의를 중심으로 하며, 협의는 사유지 비법정도로 중 지목상으로 도로가 아닌 토지임
- 결과적으로 서울의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 면적대비 약 3.3~11.2% 수준으로 추정되며, 부산의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 면적대비 약 2.9~8.4% 수준으로 추정됨
- 다만, 사유지 법정도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사유지 비법정도로인 비법정

도로의 면적 및 비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을 수 있음

[표 2] 지자체 제공 도로 현황

(단위: 1,000㎡)

지역	전체 도로 면적 (A)	국·공유지 도로 면적 (B)	계 (C)	사유지 도로 면적						
				사유지 법정 도로				사유지 비법정 도로		
				소계 (D)	미분양지	사도법상 사도	건축법상 도로 등 기타	소계 (E)	지목상 도로	지목상 비도로 (F)
서울	91,998 (100.0%)	81,302 (88.4%)	10,696 (11.6%)	407 (0.4%)	- (0.0%)	306 (0.3%)	101 (0.1%)	10,289 (11.2%)	7,287 (7.9%)	3,002 (3.3%)
부산	68,356 (100.0%)	60,038 (87.8%)	8,318 (12.2%)	2,591 (3.8%)	167 (0.2%)	2 (0.0%)	2,423 (3.5%)	5,727 (8.4%)	3,778 (5.5%)	1,949 (2.9%)

출처: 국토연구원(2022)

- (2안) 서울, 부산 외 지자체는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 실제 이용 현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시지가_토지특성_2021’을 통하여 각 필지별 토지이용 현황(도로 등)을 분석하였음
 - 소유 주체는 ‘국가공간 개방데이터(16년)’의 ‘토지소유정보’를 사용해 구분하였으며, 각 필지별 정부, 지자체, 군, 개인, 법인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음
 - 최종적으로 두 가지 자료를 결합하고 지자체 자료를 일부 활용하여, 전체 도로(a), 국·공유지(b), 사유지 도로(c), 사유지 법정 도로(d), 사유지 비법정 도로(e)를 구분하였음
 - 2안의 비법정도로는 광의(e)를 중심으로 하며, 특히 서울, 부산 외 지자체 자료 중 지목은 파악이 어려워, 지목상 비도로에 따른 ‘협의의 비법정도로’ 추정을 제외함
 - 다만,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에는 ‘사유지 법정 도로(d)’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 그러나 ‘사유지 법정 도로(d)’에 대해 활용한 지자체 자료에도 한계가

존재하여,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유지 비법정 도로(e)’를 추정하여 비법정도로 추정치를 산출함

- 첫 번째 방법인 지자체 자료 기반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한 사유지 법정 도로 자료(d1)를 단순 합계하여 이를 제외한 사유지 비법정도로로 비법정도로(e1)를 추정함
- 두 번째 방법인 일정 비율 가정 기반방식은 답변이 양호한 부산시의 ‘사유지 법정도로’ 면적비율(3.9%, d2)을 다른 지자체에 일정하게 적용하여 비법정도로(e2)를 추정함

○ 추정 결과, 광의의 비법정도로 추정치는 전체 도로 면적대비 5.0~27.1% 수준임

- 광의의 사실상 도로에서 전체 도로 면적대비 추정치가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이며 (5.0%), 전체 도로 면적대비 추정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나타남 (27.1%)

[표 3] 비법정도로 면적 추정치

(단위: 1,000㎡)

지역	전체 도로 면적 (a)	국·공유지 도로 면적 (b)	계 (c)	사유지 도로 면적			
				사유지 법정 도로 추정치(d)		사유지 비법정 도로 추정치(e)	
				(d1) 지자체자료	(d2) 일정비율	(e1) 지자체자료	(e2) 일정비율
서울	91,248 (100.0%)	82,756 (90.7%)	8,492 (9.3%)	407 (0.4%)	3,599 (3.9%)	8,085 (8.9%)	4,893 (5.4%)
인천	92,984 (100.0%)	82,144 (88.3%)	10,840 (11.7%)	1,133 (1.2%)	3,667 (3.9%)	9,707 (10.4%)	7,173 (7.7%)
대전	11,467 (100.0%)	9,646 (84.1%)	1,821 (15.9%)	64 (0.6%)	447 (3.9%)	1,757 (15.3%)	1,374 (12.0%)
대구	2,625 (100.0%)	1,907 (72.3%)	718 (27.4%)	6 (0.2%)	102 (3.9%)	712 (27.1%)	615 (23.5%)
광주	42,129 (100.0%)	38,029 (90.3%)	4,101 (9.7%)	227 (0.5%)	1,662 (3.9%)	3,874 (9.2%)	2,439 (5.8%)
울산	38,697 (100.0%)	33,960 (87.8%)	4,737 (12.2%)	70 (0.2%)	1,509 (3.9%)	4,667 (12.1%)	3,228 (8.3%)
부산	65,702 (100.0%)	59,812 (91.0%)	5,890 (9.0%)	2,591 (3.9%)	2,591 (3.9%)	3,299 (5.0%)	3,299 (5.0%)

출처: 국토연구원(2022)

제2절 비법정도로 민원 현황

□ 민원 자료 및 분석방법

- 비법정도로는 사유지 비법정도로로써 유지·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상당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사례는 관련 자료가 부족한 비법정도로의 갈등 관계 및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기능함
- 국토연구원(2022)에서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의 도로 및 도시계획 담당자 등으로부터 최근 2년간(2019~2020년)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 자료를 확보하였음
 - 민원 자료는 자치구별로 조사되어 광역지자체인 특·광역시별로 집계되었음
 - 민원 건별로 접수일, 지목, 세부 내용, 토지비 부담 및 도로 포장요구 여부 등을 조사함
- 비법정도로에 관한 민원은 주로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5가지 카테고리로 집계될 수 있음
 -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① 토지소유자 등의 통행 방해 신고, ②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요구 및 사고 예방 요청, ③ 비법정도로의 정비 및 신설 요청이 있었음
 -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발생한 민원은 ④ 시설설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비롯해, ⑤ 그 외에도 토지비 요구, 토지매수 요구 등이 있음

□ 분석 결과

- 자료를 제출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의 민원 사례는 규모 측면에서 민원 수와 내용 측면에서 세부 내용으로 구분 정리할 수 있음
 - 우선 규모 측면에서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관련 민원은 서울 685건, 대구 145건, 인천 44건이 발생하였음

- 내용 측면에서는 특히 지역 주민들의 비법정도로 관리·정비 요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도시별로 33.3~95.9%에 해당함

[표 4] 주요 도시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 수(2019~2020년)

(단위: 건)

지역	계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통행방해 신고	안전사고 배상·예방	관리·정비 요청	시설설치 이의제기	토지비·매수 요구 등
서울	685 (100.0%)	8 (1.2%)	2 (0.3%)	598 (87.3%)	11 (1.6%)	66 (9.6%)
인천	44 (100.0%)	2 (4.5%)	2 (4.5%)	26 (59.1%)	2 (4.5%)	12 (27.3%)
대전	13 (100.0%)	2 (15.4%)	1 (7.7%)	6 (46.2%)	2 (15.4%)	2 (15.4%)
대구	145 (100.0%)	2 (1.4%)	0 (0.0%)	139 (95.9%)	1 (0.7%)	3 (2.1%)
광주	9 (100.0%)	2 (22.2%)	0 (0.0%)	3 (33.3%)	1 (11.1%)	3 (33.3%)

출처: 국토연구원(2022)

○ 개별 민원 사례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실제 이용 현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생활 불편 신고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통행 방해 신고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인근 주민들의 도보 통행을 방해하거나, 인근 공사 차량 등의 통행을 막는 사례가 나타나며, 방해 방식에 있어서 펜스, 비계, 컨테이너, 라바콘, 물통 등을 적치하거나 트럭을 정차한 후 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 및 예방 요구는 파손된 도로, 계단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또는 토사 유실로 인한 위험 신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사 요청 등임
-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으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차도 및 보도 관리 등에 대한 요청임
- 차도 관리·정비에 관련된 민원으로는 노후화, 파손, 침하, 침수, 누수된 도로나 비포장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 면을 포장하거나, 도로 폭을 넓히거나, 경사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음
- 그 외에도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신설 요청도 높았음

○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기되는 민원으로는 시설설치에 대한 이의제기와 토지비 요구 및 토지매수 요구 등을 들 수 있음

- 도로 및 하수관 등의 시설설치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도로에 대한 인허가, 포장공사, 하수관 개량공사 반대 및 이설 요청 등을 들 수 있음
-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등 토지비, 토지매수, 원상복구 요청 등 민원도 상당수 나타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피해도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비법정도로의 개념 정의 및 법제도 고찰에서 밝혀진 한계처럼 비법정도로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는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제도 측면에서 가치의 대립은 통행권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두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은 주로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민원은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됨에 있어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임
-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은 대부분 지역 주민에 의한 관리·정비 요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통행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임

[표 5]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지역 주민	통행방해 신고	《통행종류》 인근 주민들의 도보 통행, 인근 공사차량 통행 방해 《방해방식》 펜스, 비계, 컨테이너, 라바콘, 물통 등 적치 / 트럭 정차 후 상행위	통행권 보장
	안전사고 배상·예방	《상해배상》 파손된 도로, 계단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고예방》 토사 유실로 인한 위험 신고, 안전사고 예방조사 요청	
	관리·정비 요청	《차도관리》 노후화, 파손, 침하, 침수, 누수, 비포장 등에 따른 도로 포장, 확폭, 경사조정 요청 등 《보도관리》 보도 포장, 보도상 방호울타리, 안전봉, 볼라드 등 정비 및 신설 요청 《기타관리》 안내표지판, 도로외벽, 보안등, 자전거도로, 교량, 하수관, 배수로, 맨홀 등 정비 및 신설 요청	
토지 소유자	시설설치 이의제기	《도로 반대》 도로 사용 인허가 반대 / 도로 포장공사 반대 《하수관 반대》 공공하수관 개량 반대 / 공공하수관 이설 요청	재산권 보호
	토지비·매수 요구 등	《토지비 요구》 부당이득금 청구 / 사용·수익권 확립 요청 《매수 요구》 토지매수, 토지교환 요구 / 보상대상 여부 문의 《해제·활용》 도로구역 해제 요청 / 원상복구 요청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요청 《기타 문의》 법정 도로 해당여부 문의	

출처: 국토연구원(2022)

제4장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사례 및 관련 조례

제1절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사례

1. 경기도 양평군 사유지 보상

- 경기도 양평군은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신청접수 (2021.1.~2.) → 현장조사 → 지적측량 → 감정평가 → 보상협의 단계 추진
- 총 예산은 8억원을 투입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에 의거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가격으로 산출
- 현황도로 보상 우선순위는 아래 표 참조

[표 6] 경기도 가평군 현황도로 보상 우선순위

순위	세부 내용
1순위	기반시설 공급 및 도로보수 등 사업추진 차질 지역
2순위	마을 안길 통행제한에 따른 분쟁 지역
3순위	반복.다수인 민원 발생 지역
4순위	기타 마을 안길 내 위치한 사유지

2. 전라북도 장수군 사유지 매입

- 장수군은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주민 간의 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을안길, 현황도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로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 사례
- 매입 대상지는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 감정평가, 보상 협의, 지적정리 순으로 2021년에 진행

3. 강원도 인제군 사유지 매입

- 강원도 인제군은 6개 읍·면 내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유지 매입 진행
 - 사유지는 2020. 7. 7. ~ 8. 30.(2개월) 기간동안 신청을 받아 매입 진행
- 매수절차는 매입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등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매수 여부 결정 및 통보 → 측량 및 경계 결정 → 매매 협의 → 감정평가 의뢰 → 매수가격 결정 → 매매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순
-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표 7] 강원도 인제군 비법정도로 신청대상

순위	세부 내용
마을안길	새마을사업 또는 지역협력사업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도로
농로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며, 다수 필지에 접한 경우(필지별로 서로 다른 소유자이며, 3인 이상일 것) ※단 개발을 위해 도로형태로 분할 후 개인이 개설한 경우 제외
현황도로	이용주민이 많거나 개설되어 10년 이상 이용되고 있는 도로(항공사진 등의 과거 자료를 통해 확인)
건출물 진입도로	개발 후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수 변경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빌라형태의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

4.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

- 강화군 미불용지 보상(2019. 1.)
- 강화군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역갈등과 개인 간 분쟁 원인을 해소하고자 노력
-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인지 여부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보상 실시
 -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상 대상지 선정,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5. 국민권익위원회 사유지 보상 의결

-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문서번호: 2BA-1710-136174) 비법정도로 사용중인 사유지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의결
- 신청인 소유의 도로 130㎡의 대부분이 비법정도로 사용되고 있어 피

신청인(지자체장)에게 보상 요구

-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만 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고 신청인 소유의 비법정도로가 포장될 당시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토지 보상을 요구
-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동의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비법정도로를 직권으로 분할하면서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것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없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
-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 소유인 ○○시 ○○동 1045-11 도로 130㎡ 중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매수할 것을 의결

6. 경기도 남양주시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바로처리’

가. 추진배경

-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골목길) 파손 등 불편 민원을 시민 맞춤형으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와 민원서비스를 개선
- 비법정도로의 보다 효율적이며, 신속한 불편민원 처리와 본청 및 읍면동과 ONE+ONE 협업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과의 사전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지난 2023. 1. 2일자로 “경기도 유일 비법정도로 전담부서” 바로처리팀을 신설

나. 현황 및 문제점

- 남양주시 특성상 도심지가 5개권역으로 분산된 다핵도시로서, 약 4,300km에 이르는 비법정도로가 관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기존 읍면동에서 비법정도로 불편 민원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법정도로의 경우 전담부서인 도로관리 부서에서 전담하여 도로 불편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고 있으나, 비법정도로는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도로 파손 등 생활 불편 민원의 처리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또한,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관련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 민원 분석 결과, 마을안길 파손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총 3,869건 접수되어 비법정도로의 신속한 보수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니즈(Needs)임을 파악
-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골목길)의 파손 등 생활 불편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 맞춤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법정도로 불편 민원처리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됨

다. 추진배경

- 바로처리 유관기관 및 읍면동, 시민참여단과 ONE+ONE 협업시스템 구축
 - 바로처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간담회로 협업 강화(2023. 3. 17일)
 - 시 본청(바로처리팀) 및 16개 센터 및 읍면동과의 ONE + ONE 협업시스템 구축
 - 16개 읍면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바로처리 시민참여단(16명) 구성 · 운영으로 원활한 시민소통 민원처리와 민원피드백 강화

- “경기도 유일 비법정도로 전담부서 바로처리팀” 신설 및 운영
 - “비법정도로 전담부서 바로처리팀” 2023. 1. 2일자 신설 (1팀 : 긴급보수 추진, 현장기동반 운영 / 2팀 : 민원데이터 분석, 시민만족도 조사)
 - 바로처리팀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소규모 도로파손지의 신속 보수(총 45개소 자체보수 / 예산절감 효과 약 22백만원)
 - 사유지 편입 지연민원, 관리부서가 불명확한 평풍민원, 관련기관 협의지연민원, 고질민원 등 적극 해소
 - 매월 바로처리 접수 민원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및 민원데이터 분석 실시
- 총 4개권역 관내를 세분화하여 긴급보수 단가계약 및 현장 기술검토 추진
 - 총 4개권역으로 관내 세분화하여 긴급보수 단가계약 추진하여, 보다 신속한 불편 민원처리로 보수기한 단축 및 시민 만족도 조사 평균 80% 달성(2023. 3월 ~ 6월)
 - 신속한 현장확인(기술검토)과 시민소통을 통한 시민 니즈(Needs) 민원서비스 질 개선

라.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 바로처리 불편민원 처리 실적 : 총 793건 처리완료(‘23. 8. 31일 기준)
- 현장기동반 자체 보수 실적 : 총 45건 보수완료(‘23. 8. 31일 기준)
 - 약 22백만원 예산절감 효과(45개소 × 개소당 약 500천원)
- 읍면동,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 간담회(보고회) 개최 : 총 5회
- 언론보도 및 홍보 : 총 8회

○ 센터 및 읍면동 비법정도로 업무 가이드라인 및 ONE+ONE 협업시스템 교육

○ 긴급보수 단가업체 긴급보수 민원매뉴얼 및 안전·친절 교육

[그림 2] 16개 바로처리 협업체계 구축



읍면동 담당자 간담회(교육) 개최(2023.1. 27.)

단가업체 및 읍면동 담당 교육 실시(2023. 2. 13.)

○ 2023. 2월 바로처리 시범운영 및 3월 1일자로 본격 운영 시작

- 비법정도로 불편민원 총 793건 처리완료('23. 8. 31일 기준)
- 바로처리팀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기동반 운영하여 총 45개소 자체 보수완료

[그림 3] 비법정도로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대 운영



바로처리 단가계약 긴급보수 현장사진

현장기동반 긴급보수 현장사진

- 16개 읍면동 대표로 구성된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23. 3. 10)
- 2023년 바로처리 상반기 성과보고회 개최(‘23. 7. 27)
 - 바로처리 운영현황 및 상반기 성과 실적 공유, 운영 개선방안 논의 등

[그림 4]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추진



- 2023. 4. 14일 “제294회 시의회임시회 자치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 시 “적극행정(민원개선) 수범사례” 로 격려
 - 일부 상가 주민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한 설득 및 의견수렴 등으로 주차방지시설 및 가상방지턱 2개소 설치 완료하여 통행 불편 적극 해소

[그림 5] 마을안길 통행 불편 해소(통학로 확보 등)



○ 사유지 미동의로 보수가 지연된 고질 민원지로 사용 동의 후 긴급보수 (L=70m) 완료

- 사유지 토지주 설득(동의) 및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지장통신주(KT) 이설 조치

[그림 6] 사유지 편입 고질적인 통행 불편 해소



제2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도로 관련 조례

1. 강원도 건축 조례

- 강원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에서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관련 조항을 아래 표와 같이 제·개정, 시행 중임

[표 8] 강원도 지역 건축 조례

순위	세부 내용	개정일자
동해시	○ 10년 이상 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폭 2m이상의 통로 ○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17.09.29.
양구군	○ 토지분할 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토지 분할되어 인접분할필지 송자의 공유지분인 토지로서 일부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 중이고 각 분할필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건축조례 제33조(도로의 지정)	2018.02.19.
철원군	○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민법에 따른 주위통행권이 결정된 경우 ○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18.08.16.
화천군	○ 지목 상 대지일지라도 상·하수도가 매립되고 포장된 후 수년간 도로로 사용중인 통행로 ○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20.07.16.
횡성군	○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 건축조례 제28조(도로의 지정)	2017.04.20.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2021)

□ 강원도 동해시 건축 조례

- 동해시 건축 조례 제31조, 2017. 9. 29.
- 동해시는 10년 이상 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이 가능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상 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
2.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3.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토지

□ 강원도 양구군 건축 조례

- 양구군 건축 조례 제33조, 2018. 2. 19.
- 양구군은 토지분할 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분할되어 인접 분할필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인 토지로서 일부포장 되어 도로로 이용 중이고 각 분할필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가능

제33조 (도로의 지정)

- ①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2. 19.>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포장도로(관계부서와 협의 후 이상이 없는 국(군)유지상의 하천, 구거, 제방, 공원 내 포장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을 포함한다)

2.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3. 기존 포장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토지분할 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토지 분할되어 인접 분할필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인 토지로서 일부포장되어 도로로 이용중이고 각 분할필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설 2018. 2. 19.>

□ 강원도 철원군 건축 조례

- 철원군 건축 조례 제31조, 2018. 8. 16.
- 철원군은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가능

제31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 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2. 제방도로
3.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등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4.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5.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 강원도 화천군 건축 조례

- 화천군 건축 조례 제31조, 2020. 7. 16.

- 화천군은 지목상 대지일지라도 상·하수도가 매립되고 포장된 후 수년간 도로로 사용 중인 통행로 등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가능

제31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 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부지 및 공원 내 도로
4. 지목상 대지일지라도 상·하수도가 매립되고 포장된 후 수년간 도로로 사용 중인 통행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강원도 횡성군 건축 조례

- 횡성군 건축 조례 제28조, 2017. 4. 20.
- 횡성군은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가능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도로 사용하는 도로
4.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포장한 도로
5.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다만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건축 조례

- 수도권 지역 자치법규(건축 조례)에서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관련 조항을 아래표와 같이 제·개정, 시행 중임

[표 9] 수도권 지역 건축 조례

구분	세부 내용	개정일자
서울시	-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비법정도로, 제방도로 -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2021.05.20.
인천시	- 시내버스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17.06.05.
수원시	-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가 된 경우 - 건축조례 제34조(도로의 지정)	2020.10.05.
파주시	-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라 개설된 도로, 마을안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 건축조례 제26조(도로의 지정)	2018.09.28.
포천시	- 산속의 통로, 소규모 농로길,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 - 건축조례 제25조(도로의 지정)	2017.09.27.
가평군	- 비법정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되거나 확장된 도로 - 건축조례 제26조(도로의 지정)	2010.08.02.
양평군	-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 건축조례 제24조(도로의 지정)	2017.09.04.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2021)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2021. 5. 20.
- 서울시는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비법정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 4., 2018. 5. 3., 2018. 7. 19.>

1. 복개된 하천·구거(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비법정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전문개정 2009. 11. 11.]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 2017. 6. 5.
- 인천시는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31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경기도 수원시 건축 조례

- 수원시 건축 조례 제34조, 2020. 10. 05.
- 수원시는 복개된 하천 및 도랑부지와 공원 내 도로,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 도로로 사용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도로는 미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1. 복개된 하천 · 도랑부지 (개정 2021.01.07)
2. <삭제 2020.10.05>
3. 공원 내 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가 된 경우 (개정 2020.10.05.)

□ 경기도 파주시 건축 조례

- 파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2018. 9. 28.

- 파주시는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라 개설된 도로, 마을안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등 비법정도로를 파주시 건축조례 제26조를 근거로 도로 지정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장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 도로로써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5. 14)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라 개설되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 (개정 2013. 5. 14)
2. 마을안길 통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할 때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개정 2013. 5. 14)

○ 경기도 파주시 건축 조례

○ 포천시 건축 조례 제25조, 2017. 9. 27.

○ 포천시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통로, 산속이 통로, 소규모 농로길,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4. 17., 2007. 1. 10., 2008. 10. 1., 2013. 9. 27.>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

3. 공원 내 통로
4. 산속의 통로
5. 소규모 농로길
6.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 경기도 가평군 건축 조례

- 가평군 건축 조례 제26조, 2010. 8. 2.
- 가평군은 비법정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복개된 하천 및 도랑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
5. 비법정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 경기도 양평군 건축 조례

- 양평군 건축 조례 제24조, 2017. 9. 4.
- 양평군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제2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6. 1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4. 12. 29)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3. 충청도 건축 조례

- 지역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에서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관련 조항을
아래 표와 같이 제·개정, 시행 중임

[표 10] 충청도 지역 건축 조례

구분	세부 내용	개정일자
대전시	○ 복개된 하천 및 구거(溝渠)부지, 공원 안 도로, 제방도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를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 ○ 건축조례 제36조(도로의 지정)	2017.10.18.
제천시	○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된 경우 ○ 건축조례 제29조(도로의 지정)	2015.10.08.
청주시	○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도로 ○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21.07.16.
충주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 ○ 건축조례 제29조(도로의 지정)	2020.10.30.
옥천군	○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포함)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건축조례 제34조(도로의 지정)	2020.12.30.
음성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도니 하천·도랑·제방 ○ 건축조례 제28조(도로의 지정)	2019.07.05.
공주시	○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및 공공사업,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 ○ 건축조례 제28조(도로의 지정)	2017.12.08.
아산시	○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도로 ○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21.06.07

천안시	○ 주민공동 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 건축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19.04.01.
부여군	○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 ○ 건축조례 제29조(도로의 지정)	2017.12.18.
청양군	○ 공동사업으로 개설하였거나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 등 ○ 건축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	2018.01.24.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2021)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 대전광역시는 건축 조례 제36조(개정: 2017. 10. 18.)에서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 대전광역시는 복개된 하천 및 구거(溝渠)부지, 공원 안 도로, 제방도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를 사실상 통로로 인정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溝渠)부지
2. 공원 안 도로
3. 제방도로
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토지

□ 충청북도 제천시 건축 조례

- 제천시 건축 조례 제29조, 2015. 10. 08.
- 제천시는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장된 사실상의 도로, 복개하천, 구거도로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천시 건축 조례 제29조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15. 10. 8.>

1. 주민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장된 사실상의 도로, 복개하천, 구거도로, 제방 <개정 2015. 10. 8.>
2.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개정 2015. 10. 8.>

□ 충청북도 청주시 건축 조례

- 청주시 건축 조례 제31조, 2021. 07. 16.
- 청주시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도니 통로나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등을 청주시 건축 조례 제31조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써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충청북도 충주시 건축 조례

○ 충주시 건축 조례 제29조, 2020. 10. 30.

○ 충주시는 주민이 20년 이상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접해져 있는 통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
2. 주민이 20년 이상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접해져 있는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 충청북도 옥천군 건축 조례

○ 옥천군 건축 조례 제34조, 2020. 12. 30.

- 옥천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 등을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도 옥천군 건축 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3.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포함)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충청북도 음성군 건축 조례

- 음성군 건축 조례 제28조, 2019. 07. 05.
- 음성군은 공원 내 도로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 도랑 · 제방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제28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제1965호, 2019.7.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 도랑 · 제방 <개정 2019.7.5.>

2. 공원 내 도로
3.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 충청북도 공주시 건축 조례

- 공주시 건축 조례 제28조, 2017. 12. 08.
- 공주시는 공공사업 및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이나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등은 공주시 건축 조례 제28조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가능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2. 공공사업,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

□ 충청북도 아산시 건축 조례

- 아산시 건축 조례 제31조, 2021. 06. 07.
- 아산시는 주민이 통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선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아산시 건축 조례 제35조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가능

제31조(도로의 지정)

-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6.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2017.06.05)

□ 충청남도 천안시 건축 조례

- 천안시 건축 조례 제31조, 2019. 4. 1.
- 천안시는 주민공동 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등은 천안시 건축 조례 제31조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 동의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7.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써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8.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충청남도 부여군 건축 조례

- 부여군 건축 조례 제29조, 2017. 12. 18.
- 부여군은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2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12. 31.>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충청남도 청양군 건축 조례

- 청양군 건축 조례 제32조, 2018. 1. 24.

- 청양군은 주민 공동사업으로 개설되거나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는 농로 등은 건축 조례 32조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32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 12. 15.>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유지·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경상도 건축 조례

- 경상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에서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관련 조항을 아래 표와 같이 제·개정, 시행 중임

[표 11] 경상도 지역 건축 조례

구분	조례 내용	개정 일자
부산시	○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비법정도로 ○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2019.07.10.
대구시	○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 건축 조례 제34조(도로의 지정)	2018.04.10.
울산시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건축 조례 제23조(도로의 지정)	2017.12.28.
경주시	○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 건축 조례 제25조(도로의 지정)	2017.09.08.
구미시	○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도로 ○ 건축 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	2010.10.01.
문경시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 ○ 건축 조례 제17조(도로의 지정)	2018.04.13.
영천시	○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은 도로 ○ 건축 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	2017.12.29.
울진군	○ 제방도로, 마을 안 도로 ○ 건축 조례 제21조(도로의 지정)	2016.12.26.

거제시	◦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 ◦ 건축 조례 제18조(도로의 지정)	2009.12.09.
진주시	◦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 건축 조례 제34조(도로의 지정)	2019.04.12.
거창군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 건축 조례 제36조(도로의 지정)	2020.05.06.
하동군	◦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덮어 씌워진 지목이 하천 및 구거 인공부지 ◦ 건축 조례 제23조(도로의 지정)	2013.04.10.
합천군	◦ 다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2014.04.22.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 2019. 7. 10.
- 부산광역시는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써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비법정도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3.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비법정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전문개정 2018. 9. 19]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4조, 2018. 4. 10.
- 대구광역시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 2019. 7. 10.
- 울산광역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가능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4, 2009· 3· 5, 2016· 12· 29>

1.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 또는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
2. 하천이나 제방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경우(제방도로를 포함한다)
3.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되거나 확장된 도로
4.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건축 조례

○ 경주시 건축 조례 제25조, 2017. 9. 8.

○ 경주시는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등 경주시 건축조례 제25조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9.8>

1.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4.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경상북도 구미시 건축 조례

- 구미시 건축 조례 제32조, 2010. 10. 1.
- 구미시는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나 새마을사업 등 마을 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도로 등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제32조(도로의 지정)

-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 및 포장된 하천 및 구거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 3.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 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도로
 - 5.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출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 조례

- 문경시 건축 조례 제17조, 2018. 4. 13.
- 문경시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포장된 제방, 공원 내 도로, 임도, 소규모 골목길은 도로 지정 가능

제1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2.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제방
3.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 내 포장된 도로
4.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도
5.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
6. 공공사업으로 이미 개설·포장된 도로

□ 경상북도 영천시 건축 조례

- 영천시 건축 조례 제32조, 2017. 12. 29.
- 영천시는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32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도로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 제방 및 공원, 유원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

□ 경상북도 울진군 건축 조례

- 울진군 건축 조례 제21조, 2016. 12. 26.
- 울진군은 제방도로, 마을안 도로,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마을안 도로
4.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
5.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포장된 도로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 조례

○ 거제시 건축 조례 제18조, 2009. 12. 9.

○ 거제시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나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해온 통로 등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그 통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

제1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그 통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도로가 미 개설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3. 제방도로
4. 공원 내 도로
5.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

6.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전부 개정 2009.10.12.]

□ 경상남도 진주시 건축 조례

○ 진주시 건축 조례 제34조, 2019. 4. 12.

○ 진주시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진주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도로 지정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12.>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이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비법정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 경상남도 거창군 건축 조례

○ 거창군 건축 조례 제36조, 2020. 05. 06.

○ 거창군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등은 거창군 건축 조례 제36조를 근거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

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군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 주민 다수가 그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 경상남도 하동군 건축 조례

○ 하동군 건축 조례 제23조, 2013. 4. 10.

○ 하동군은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덮어 씌워진 하천 및 도랑부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2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15.조1855>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덮어 씌워진 하천 및 도랑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 경상남도 합천군 건축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27조, 2014. 4. 22.

○ 합천군은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등은 합천군 건축 조례 제27조에 근거하여 도로 지정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4.4.22>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2.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다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5. 전라도 건축 조례

- 전라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에서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관련 조항을 아래 표와 같이 제·개정, 시행 중임

[표 12] 전라도 지역 건축 조례

구분	조례 내용	개정 일자
광주시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 건축 조례 제30조(도로의 지정)	2019.10.15
군산시	○ 제방도로, 농로, 공원 안의 도로 등은 군산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근거하여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 건축 조례 제39조(도로의 지정)	2021.05.07
김제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 건축 조례 제33조(도로의 지정)	2019.07.17
남원시	○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 건축 조례 제29조(도로의 지정)	2015.03.31
익산시	○ 폭 2미터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 이상이 활용하는 개설된 도로 ○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2010.01.15
전주시	○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 건축 조례 제35조(도로의 지정)	2020.12.28
나주시	○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 건축 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	2016.12.30.
순천시	○ 하천제방 길 ○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2018.10.01.
담양군	○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용한 통로 ○ 건축 조례 제31조(도로의 지정)	2017.12.20.
무안군	○ 소규모사업으로 포장된 농로 ○ 건축 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	2020.10.12.
화순군	○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 건축 조례 제25조(도로의 지정)	2016.12.30.
제주도	○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구거, 농로 ○ 건축 조례 제25조(도로의 지정)	2016.11.23.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0조, 2019. 10. 15.
- 광주광역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3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3. 제방도로
4. 공원내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 전라북도 군산시 건축 조례

- 군산시 건축 조례 제39조, 2021. 5. 17.
- 군산시는 제방도로, 농로, 공원 안의 도로 등은 군산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근거하여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3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지정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명서류

□ 전라북도 김제시 건축 조례

- 김제시 건축 조례 제33조, 2019. 7. 17.
- 김제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등은 김제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근거하여 도로 지정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 조례

- 남원시 건축 조례 제29조, 2015. 3. 31.
- 남원시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및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등은 남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도로 지정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7., 2015.3.31.>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 구거 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 전라북도 익산시 건축 조례

- 익산시 건축 조례 제27조, 2010. 1. 15.
- 익산시는 폭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 이상이 활용하는 개설된 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와 같은 경우 도로 지정 가능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0.01.15>

1. 폭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 이상이 활용하는 개설된 도로
2. 2세대 이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농로,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단, 폭2미터 이상인 도로에 한함)

□ 전라북도 전주시 건축 조례

- 전주시 건축 조례 제35조, 2020. 12. 28.
- 전주시는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0.01.15>

1. 폭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 이상이 활용하는 개설된 도로
2. 2세대 이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농로,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단, 폭2미터 이상인 도로에 한함)

제35조(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및 공원안의 도로
3.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 전라남도 나주시 건축 조례

○ 나주시 건축 조례 제32조, 2016. 12. 30.

○ 나주시는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된 도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가능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4. 11. 10.>

1.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4. 제방이 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6.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경우
7. 그 밖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8.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시설이 있는 경우<개정 2014. 11. 10.>

□ 전라남도 순천시 건축 조례

- 순천시 건축 조례 제27조, 2018. 10. 1.
- 순천시는 2호 이상의 마을진입도로 및 하천제방 길을 도로로 지정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4. 11. 10.>

1.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4. 제방이 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6.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경우
7. 그 밖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8.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시설이 있는 경우<개정 2014. 11. 10.>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01. 09., 2013. 12. 31.>

1. 2호 이상의 마을진입도로
2. 하천제방 길

□ 전라남도 담양군 건축 조례

○ 담양군 건축 조례 제31조, 2017. 12. 20.

○ 담양군은 3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통로,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용한 통로를 도로로 지정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로
2. 3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통로
3.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용한 통로
4. 읍·면지역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통로
5.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자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7.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
8.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통로

□ 전라남도 무안군 건축 조례

○ 무안군 건축 조례 제32조, 2020. 10. 12.

○ 무안군은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소규모 사업으로 포장된 농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32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소규모 사업으로 포장된 농로길
7.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 전라남도 화순군 건축 조례

- 화순군 건축 조례 제25조, 2016. 12. 30.
- 화순군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사업단지 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코자 개설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개정 2014. 9. 24)
3.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4.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5. 수도, 하수도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6.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일 경우<신설

2015. 1. 9.>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5조, 2016. 11. 23.
- 제주도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9. 27., 2009. 8. 5., 2015. 10. 6.>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제3절 비법정도로 분쟁 사례

[표 13] 비법정도로 분쟁 사례

구 분	요 약	주요내용
국토해양부	비법정도로 도로점용 허가권('12.8.16.)	○ 개인사유지 내의 도로는 행정법상 규율 대상에서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마을안길 지적과 현황 불일치 해소	○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토지보상 이행 촉구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보상 이행촉구 각하
울산광역시 울주군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방안 필요성 강조	○ 최근 3년간 비법정도로 소송에서 승소 2건, 패소 2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10건으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안 마련	○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보상 관련 민원제기 미지급 용지, 법정도로 중 버스노선 등 불특정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 용지 순으로 보상금 지급
경기도 파주시	비법정도로 정비	○ 마을안길 내 균열, 파손 등 보수 및 도로 재포장 등 정비
경기도 광주시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방안	○ 비법정도로 민원 방지를 위하여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
충청북도 증평군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방안	○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추진
경상북도 예천군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 요구	○ 신규 시설물 설치 시 사유지 기부채납 원칙 등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도입기준안 마련

□ 국토해양부 비법정도로 도로점용 허가권 해석

- 국토해양부 민원마당(2012.08.16.)의 비법정도로 도로점용 허가권 해석
- 개인사유지 내의 도로는 현황도로 또는 관습상의 도로이며 이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상 규율 대상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개인사유지 내의 도로는 현황도로 또는 관습상 도로이며 이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도로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마을안길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2016.10.28.) 마을안길 불일치 사항 해소 건
-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안길을 40여 년 동안 주민들 이용
 -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km 정도)의 도로는 새마을사업(마을 자조사업)으로 조성
 -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지적공부상 밭(田)과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하여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 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 완도군 부군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현장 조정·합의 회의를 개최하여 완도군은 마을안길의 토지이동(도로, 지목 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문서번호: 강행심 2018-69)는 토지 보상 이행촉구 재결 건 각하
-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1,927㎡를 아버지로부터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았으며 상속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 일부 400㎡의 콘크리트 포장공사와 상수관로 매설공사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대책장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보상을 요청
- 피청구인 ○○군수는 청구인의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마을안길로 보상의 근거가 없으며 상수관로 역시 원상복구가 불가함을 회신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구하는 보상이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군수에 대한 문책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보상 이행촉구 각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례

- 2020년 발생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비법정도로 사례(2020. 11. 17.)
- 울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성 강조
- 울주군은 최근 3년간 비법정도로 보상과 관련하여 총 15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승소 2건, 패소 2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10건으로 조사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제22조(도로의 지정)에 근거해 도로의 지정이 가능하고 같은 법과 조례에 따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울주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안 마련

- 2020년 기준으로 제주도에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는 개인 소유 토지)가 산재해 있고 보상 금액으로 1조2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그동안 무상 사용하였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당이득금과 더불어 사용료 지급, 보상 신청 증가 추세
- 제주도는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을 마련해 다음과 같은 보상금 지급 순서를 정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보상 관련 민원제기 미지급용지, 법정도로 중 버스노선 등 불특정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순으로 보상금 지급

□ 파주시 비법정도로 정비 추진

- 파주시 비법정도로 정비 추진 사례(2020. 1.)
-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 17.56억원으로 마을안길 내 군열, 파손 등 보수 및 도로 재포장 등 정비 추진

□ 경기도 광주시 분쟁 해결 방안

- 경기도 광주시는 비법정도로 분쟁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정 없음
- 현재 현황도로(사유지) 내 개인재산권 행사를 위한 횡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 불편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빈번하게 발생
- 개인 사유지 내 사유재산의 임의 이동 및 철거는 행정법상 법적 근거 미
비로 강제 조치가 어려움
 - 민법 제219조 주의토지통행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등 민·형법에 따
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사건 종결 처리
- 추가적인 유사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시 공공용 도
로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서를 지속적으로 징구

□ 충청북도 증평군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사례

- 증평군 비법정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비법정도로(현황도로)는 토지의 소
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조성되어 비법정도로 내의 사유지
보상에 대한 관련법령, 처리지침 등 법적 근거 미비
 - 비법정도로 내의 사유지 보상을 요구할 경우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로 결
정되어 편입될 경우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회신
- 비법정도로 사업 시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추진 시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사
업을 진행

□ 경상북도 예천군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사례

- 비법정도로 등에 대한 사유지 소유권 분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민원 발생
-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도입기준안 마련
 - 신규 시설물 설치 시 사유지 기부채납 원칙
 - 마을안길 및 진입로는 보상
 - 기존 사유지 민원구간은 사업 시 보상을 추진하고 민원 발생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 검토

제4절 세종특별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사례

1. 비법정도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문제점

- 도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구분
 - 사도는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 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
- 사도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며 소유주가 폐쇄할 수도 있고 도로로 사용 시에는 토지사용승낙 필요
 - 사도는 도로로 수용 시에는 현황 지목에 의해 평가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도를 도로사용 승낙 계약이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변동되면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속 진입로로 사용 불가
 -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개설 시에는 유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조건부로 해당 필지에 도로 고시 이후 허가 승인
- 현황도로는 폐쇄는 불가능하나 개인 소유 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
 - 일반적으로 사용 시에는 도로소유자의 승낙 여부는 불필요하고 건축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인정이나 전용허가 시에 가능하며 수용 시의 보상액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로 평가보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적정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진행하기도 함
 - 현황도로는 대부분 폭 2m내외 자연 발생 된 도로이며 비도시지역인 산골의 산재된 소수 촌락의 진입로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새마을도로, 좁은 농로에 인접하여 구거, 임야 등의 부지를 통합하여 2~3m 폭으

로 확장 및 개설된 도로

- 통로는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과 관련법에 의하여 당사자 간 해결
 - 통로는 맹지로서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특정필지는 통로를 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도로 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보통 1.5~2m정도
 - 부득이 남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분할로 인하거나 일부 양도로 인한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준용
- 임도개설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및 준공을 취득하여도 임도는 산림법에서 산림으로 규정
 - 농지를 전용한 도로는 중복으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먼저 사도개설 신청을 해놓은 사람이 있을 경우 중복허가가 불가하여 부지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기 전에는 추후 신청자는 건축허가 불가

□ 개선 방향

- 우회도로 없이 유일한 통행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만약에 불가피하게 통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엔 우회도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도로포장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이 투입된 비법정도로를 무단으로 막을 때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 비법정도로를 매수하는 등의 지속적인 대응방법 보완이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사유지 토지소유

자가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포장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예산 확보

○ 농로는 개인의 권리주장이 강하므로 마을 진입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사적자치 또는 민사조정(소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로의 규모나 형태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 성격을 갖춘 조정 및 개입 필요

○ 유상의 토지사용승낙서와 관련하여 최근 토지소유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사도개설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로 타인의 무료사용 조건을 부여받은 이후 시행하고 있음

○ 지적재조사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임

2.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방안

□ 지적재조사를 통한 단계별 지적 정리를 통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적 현황을 파악하고 오류를 바로 잡아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시민들의 심화된 갈등 해소 추진

-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37개 지구 9,177 필지가 해당
- 약 7년간(' 13~' 19년) 13개 지구 2,326필지를 수치 지적으로 전환(30%)

○ 3년간(' 17~' 19년)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징수액 36억원, 지급액 33억원으로 상쇄 가능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 세종특별자치시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분쟁 지역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각 점유지에 대한 상계처리 시 세입과 세출의 오차가 5% 이내(세종특별자치시 기존 사례 참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 구축
- 전국 시·도 지적재조사담당 현황은 17개 시·도 중 16개 지적재조사담당을 설치하였고 제주시는 자치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세종특별자치시만 미설치
-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확대를 통한 사업지구 확대와 전담조직 신설과 전담인력 충원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비법정도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지역의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현재 2명의 전담인원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 비법정도로 무단 폐쇄 등 주민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대응

- 비법정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경우에 무단으로 주민통행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민법」, 「형법」에 따라 조치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도로, 즉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경찰서장은 그 물건의 제거를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또한, 「형법」에서도 제185조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명시하고 있음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불어,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 그 주위 토지소유자가 주변인의 통행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등 일정 범위에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통행 방해행위가 제한된다고 할 것임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기존 분쟁은 원활한 분쟁 해결이 가능토록 계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소송의 추진 결과가 나온 경우는 소송 결과대로 행정조치 진행

□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농로 및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소규모 공공시설’로 관리
 -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가능함
- 마을진입로 3m 이상, 농로 2.5m 이상인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도로시설이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기는 어려운 관계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방안으로써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매입

- 비법정도로 편입용지를 매입하는 방안은 소요예산*(약 3~4조원으로 추정) 확보의 어려움과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 토지 지적도를 통해 사유지의 비법정도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토지가격을 계산할 경우로 추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실제 토지 보상 관련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3. 향후 정비하는 비법정도로 분쟁 발생 방지방안

□ 사유 토지 점유 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한 사유 토지 점유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징구 후 사업 추진, 토지사용승낙서가 미첨부된 공공사업은 미시행
-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서식 부재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각 부서별 승낙서 서식이 상이한 바,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마련·사용이 필요
- 현재 각 부서별 토지사용승낙서상 토지 상속, 매매 등으로 승계 시 승계인에게 사용승낙 내용에 대한 승계효력 유지가 어려운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토지사용승낙서 사후관리를 통한 승낙효력 유지를 위하여, 영구보존 방안, 토지사용 승낙사항(지번, 면적 등),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그림 7] 토지승낙서 표준(안)

토지사용 승낙서 [안]

▶ 토지의 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	예상편입 면적(㎡)	소유자	
읍면	리	번지				주소	성명

※ 설계 완료 후 편입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 ▶ 사 업 명 :
- ▶ 사 용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 사용기간 : 시설물 존치 시 까지
- ▶ 본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부분에 대하여 무상 사용함을
 승낙하고 일체의 이의제기(원상복구, 사용료요구, 타인의 이용
 제한, 법적분쟁 등)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소유권이전(상
 속, 증여, 매매, 보전등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 사용승낙
 서의 효력을 권리승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본인에
 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의
의
의

- ▶ 토지사용 승낙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불 입 : 인감증명서 1부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토지사용 승낙서 [안]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	예상편입 면적(㎡)	소유자	
읍면	리	번지				주소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건축 조례에 따른 도로 지정 후 공사 시행과 조례 적용 사각지대 해소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읍지역은 현행 건축 조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지정 후 정상적인 공사 시행 가능

○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적용 불가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면지역에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건축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 건축 조례 예외지역인 면지역도 건축 조례 적용을 위한 건축법 제3조 제2항 개정안 마련
- 건축법 제3조 제2항은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변경’ 관련 법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 따라서 건축법 제3조 제2항 관련 건축법 제45조(건축 조례의 도로지정 근거) 적용 제외 법률 개정 건의 필요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 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

-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 조례(제33조)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가능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개정, 2020. 4. 10.>
2.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개정, 2020. 4. 10.>
3.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개정, 2020. 4. 10.>
4. <삭제, 2020. 4. 10.>

- 현재 위 조례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보완 필요

- 필요 시 추가할 조례 규정은 다음과 같음

-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토지(강원도 동해시, 대전광역시 등 사례) - 기존 포장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수 지자체 사례)
- 토지분할 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토지 분할되어 인접 분할필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인 토지로서 일부포장 되어 도로로 이용 중이고 각 분할필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강원도 양구군 사례)
-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할 때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경기도 파주시 사례)
-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경기도 가평군

사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수 지자체 사례)
-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다수 지자체 사례, 판례도 인정된 부분)

□ 성장관리방안 적용 대상지역의 도로계획선에 따른 도로부지 확보 및 지관리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적용 대상지역의 경우, 도로계획선에 따라 개발행위 시 도로부지를 확보 및 유지
 - 2,500㎡ 미만 개발행위 시 도로 폭 3m 확보, 2,500~10,000㎡ 개발행위 도로 폭 5m, 10,000㎡ 이상 개발행위 도로 폭 6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 기존 국·공유지 활용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분쟁의 완화

- 면단위 도로개설 시 국·공유지를 활용해 마을안길을 확충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비법정도로 분쟁 발생을 최소화
- 마을안길 등의 경우 비법정도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유지 활용으로 도로 확충 시 향후 비법정도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 비법정도로 분쟁의 대부분이 진출입로의 경우가 많아 국·공유지를 통한 통행로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분쟁을 완화 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비법정도로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가치보정방안 마련

- 비법정도로 사유지를 같은 필지의 사유지와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여
개인 사유재산권의 보장 필요

- 특히 토지 거래 시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법정도
로 편입 부분에 대한 가치를 같은 필지에 편입하여 산정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보완도 방법일 수 있음

제5장 비법정도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 가장 먼저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해 현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나가야 함

○ 비법정도로를 정의하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때 현행 법제도상 비법정도로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건축법」 제45조의 ‘사실상의 통로’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사실상의 사도(私道)’의 개념을 활용하되, 비법정도로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함

○ 비법정도로를 판단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주체, 법적 근거, 지목 등 관련 자료를 일관된 기준을 통해 정리하고 정확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비법정도로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통행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법정도로에 관련된 가치로서 통행권 보장과 재산권 보호라는 반대되는 측면이 서로 대립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의 제공이라는 헌법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비법정도로의 민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통행권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관리·정비 요청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함

○ 비법정도로의 소송 내용을 보면 주로 재산권 보호의 여부를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점유 여부를 활용하는데 결국 관리·정비 미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이 제한될 수 있음

- 특히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간 소송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비법정도로의 유형 및 보상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보다 정교한 시스템 도입에 관해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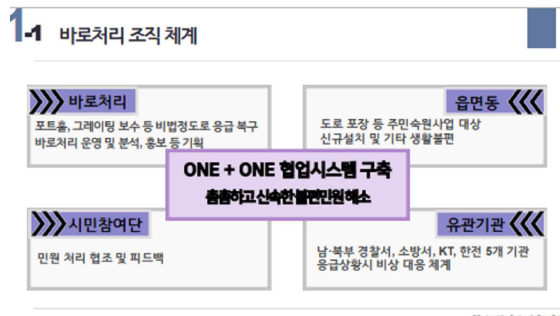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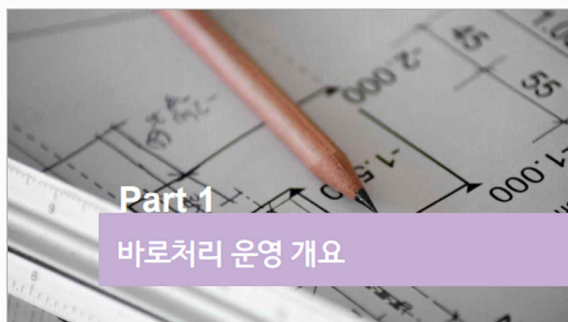
- 지역 주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관리·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제도가 부재하여,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주로 지자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장기간 법적 분쟁 과정에서 도로의 노후화 및 파손 등의 관리·정비 문제, 통행 방해, 안전사고 등으로 통행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비법정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대체도로를 신설하거나, 적정이용료 지급 등을 계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낮아 예산편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 52조의 2에 따른 ‘공공기여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이익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관할 시·군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비법정도로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축법」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현행 법제도상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수준을 뛰어넘어 관리, 정비, 보상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국민안전처·경찰청(2015).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 및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 국토교통부(2019). 도로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로관리방안 연구 용역
- 국토교통부훈령 제112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권영준(2006).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 47.
- 김면규(2019). 토지의 진입도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중보(2002). 건축법과 민사법의 접점, 중앙법학, 4(2), 63-98.3
- 노은영(2022). 비법정도로(사실상의 도로)의 정비와 관리 강화에 대해서, 「건설정책저널」.
- 대법원(2002), 2001다64165판결.
- 서영창(2018). 건축과 도로, 맑은샘, 28.
- 서울연구원(2020). 「비법정 사실상 도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세종시의회(2021). 「세종특별자치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
- 조두용(2018), 해외 주요 국가의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보고서
- 한국건설관리공사(2017).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20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울산광역시 울주군(<https://www.ulju.ulsan.kr/ulju/main.do>)
- 울산광역시(<https://www.ulsan.go.kr/u/rep/main.ulsan>)

[부 록 1] 남양주시 “바로처리”



1-2 바로처리 운영 예산

(단위 :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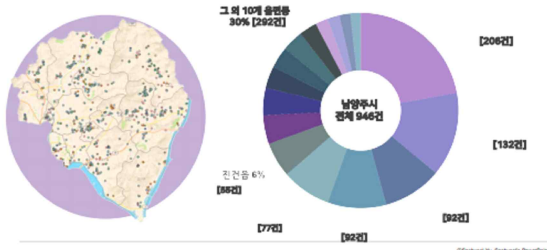
예산목	예산액	구분	내 용
합 계	1,710,420		
시설비	1,647,500	322,500	1관역(진건·퇴계원·금곡·양정) 응급 보수
		470,000	2관역(화도·수동·평내·호평) 응급 보수
		380,000	3관역(와부·조안·다산1동·다산2동) 응급 보수
		475,000	4관역(진접·오남·별내면·별내동) 응급 보수
일반운영비	17,920	10,000	현장기동 소모성 자재 및 안전 물품 구입 등
		7,920	현장기동 업무용 휴대전화 이용료 현장기동 차량 도색비
자산취득비	45,000	45,000	현장기동 차량 신규 구입(1대)

1-2 바로처리 시설비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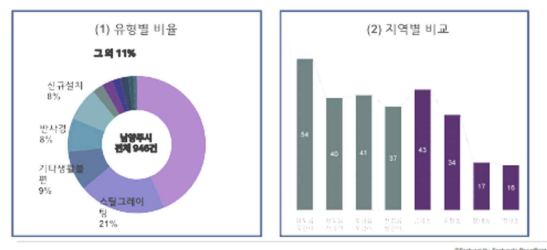
관역별	지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합 계		1,647,500	1,614,628	32,872	98.0
1관역	진건·퇴계원·금곡·양정	322,500	309,615	12,885	96.0
2관역	화도·수동·평내·호평	470,000	462,000	8,000	98.3
3관역	와부·조안·다산1·2동	380,000	379,773	227	99.9
4관역	진접·오남·별내면·동	475,000	463,240	11,760	97.5



2-1 비법정도로 민원 읍면동 분포



2-2 유형별·지역별 비율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응급보수단가입제 교육 실시
-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 홍보 활동

■ 비법정도로 바로처리 업무가이드라인 세부 설명

■ ONE + ONE 협업시스템 설명 및 읍면동 의견 수렴

→ 부서간 소통과 매뉴얼 공유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응급보수단가입제 교육 실시
-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 홍보 활동

■ 바로처리팀 신설취지 및 ONE+ONE 협업시스템 구축 설명

■ 바로처리 단가입제 응급보수 매뉴얼 세부 교육

→ 바로처리 단가입제의 신속한 응급보수로 시민불편 적극 해소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응급보수단가입제 교육 실시
-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 홍보 활동

■ 법정도로관리부서도로관리과 간담회로 협업 및 유대 강화

■ 내부 부서간(환경물류센터·상하수사업소)으로 소통 강화 및 업무협조 강화

→ 협업·소통 강화를 통한 부서간 협력 증진 및 업무협조 강화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응급보수단가입제 교육 실시
-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 홍보 활동

■ 16개 읍면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통해 바로처리 피드백 강화 및 민원처리 지역민 참여

→ 시민 소통 행정 구현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응급보수단가입제 교육 실시
-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 홍보 활동

■ 남양주경찰서·소방서·KT·에스코·한전등 6개 기관 간담회

→ 응급 상황 발생 시 역할 분담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응급보수단 7개팀에 교육 실시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홍보 활동



- 4개 권역 응급보수단 7개팀 및 현장회의 기술검토 적극 추진
- 현장기동반(바로처리 1팀) 운영으로 소파 긴급보수 추진
- 총 4개 권역 단가계약 추진 및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불편 민원 신속한 처리와 시민공감 시장 구현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응급보수단 7개팀에 교육 실시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홍보 활동



- 수해대비 비법정도로 침수 우려지 현장예찰 및 비상근무 실시
- 수해대비 긴급 도로보수용 포대야콘 읍면동 배포(약 450포)
- 수해대비 긴급 도로복구 체계 구축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응급보수단 7개팀에 교육 실시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홍보 활동



- 시민홍보
 - 시장소식지 'THE 남양주' 4월호 게재
 - 관내 30개소 홍보현수막 게시
 - 내손의 남양주, 블로그 등 SNS 활용 홍보
 - 언론보도 (8회)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1 바로처리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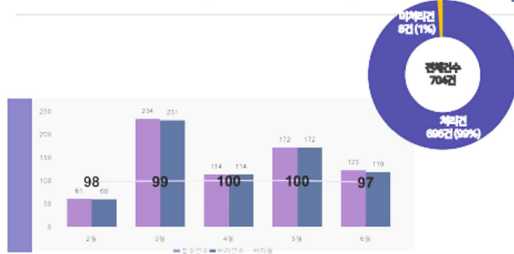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응급보수단 7개팀에 교육 실시
관련부서 간담회 및 협업-소통-유대 강화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바로처리 및 현장기동반 운영 개시
수해대비 현장점검 및 비상체계 구축
홍보 활동



- 언론보도 (8회)
 - 남양주: 남양주신문, 남양주신문, 남양주신문, 남양주신문, 남양주신문, 남양주신문, 남양주신문, 남양주신문
 - 남양주시: 남양주시민신문, 남양주시민신문, 남양주시민신문, 남양주시민신문, 남양주시민신문, 남양주시민신문, 남양주시민신문, 남양주시민신문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2 상반기 민원 처리 실적 [총 696건 처리완료]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2 민원 처리 사례

2023 자치위 행정사무감사 조차발표보고서 수습사례별 사례(2023. 4. 14.)



-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장지점(약 70m) 및 가상주차지점 2개소 설치
- 일부 상가 주차와 장애물 반대편에 있었으나, 제각각인 상가 주차 선복 및 주차라인 수월로 설치 완료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3 민원 처리 사례

사출배치 [정원할사항 정정글 게시(2023. 4. 6.)]

(2) 좌우측 턱소중학교 앞 도로 안전불스 설치



- 턱소중학교 학생들의 두발제복이나 위험한 카트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인도변 안전불스(50cm) 설치
- 현장에서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턱소중, 좌우측) 회의 후 관내부서(도로관리과) 제각각으로 설치하여 설치 완료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3 민원 처리 사례

(3) 비법정도로 불편민원 현장기동반 운영



- 소규모 파손지는 바로처리 1달로 구성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총 47개소)
- 현장기동반 자체보수로 예산 절감 : 약 20,500원(비법정도로 47건 * 개소당 500원)

©Seoul.gov, Seoul.gov's PowerPoint

3-3 민원 처리 사례

(4) 역부출 통문1의 경사지 앞 도로 경사지 보수시공 설치



- 강우시 마을안길 경사지에 토사유출이 빈번하여 통행 불편 유발, 보호사설(물막이 등) 설치로 수해 예방
- 시정없이던 (현물1리장 어부촌) 등 주민 건의사항으로, 강우시 경사면 토사 유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3-3 민원 처리 사례

(6) 오남읍 월천1리 마을안길 긴급 보수



- 사유지 비법정도로 열의 및 과속(월천1리) 보수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적극 개선
- 오남읍에서 보수 관련 어려움이 많았던 사용자인, 주민 불편(과속 및 보릿자랑에 해당수가지 등) 통행 불편 건의에 따라 도로소유자 적극 협력(경사지 경구) 후 긴급 보수 완료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3-3 민원 처리 사례

(6) 황내2동 경포당 앞 도로 포장 보수



- 황내2동 경포당 우 통행도로(포장) 노면파괴 및 장애 긴급 보수
- 해당 도로는 노면파괴와 장애로 통행 불편을 유발하는 어르신들이 도로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통행방어 해운 야간에 긴급 보수를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해소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3-3 민원 처리 사례

(7) 화도읍 차산리 일명 집중호우에 따른 경사지 수해피해 긴급 복구



- 지난 7월 12일경 호우에 따른 차산리 산7-11번지 일명 비법정도로 경사지 수해(유출) 긴급 복구
- 가림 발광자적으로 가림자(7월7일)와 일도하여 긴급도로 통행 불편 및 어르신들 적극 해소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3-3 민원 처리 사례

(8) 2023년 수해피해 비법정도로 불완전한 긴급 보수



· 포안면 삼별리 78-7번지 일명
[수해피해 후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 수해피해 1002-2 일명
[상습침수 비법정도로 보수 시인 긴급 보수]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3-3 민원 처리 사례

(8) 행정복지센터 자체 처리 사례



· 단현읍 배방리 131-3 도로 보수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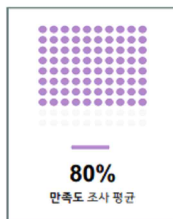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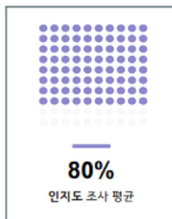
· 행정복지센터 및 읍민들 자체처리 방법을 통해 ONE-ONE 더 읍민들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차북읍 읍내리 80-5 도로 보수 공사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3-4 시민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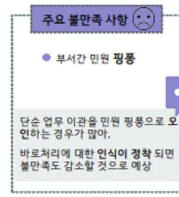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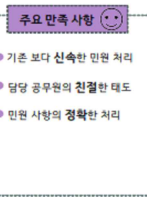
시민만족도 조사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3-4 시민 만족도 조사

시민만족도 조사



©Seokyeon Yu, Seokyeon's PhotoPost

[부 록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을안길 편입도로 보상사업 벤치마킹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 벤치마킹

1. 개 요

☐ 벤치마킹 개요

○ 일 시 : 2024. 2. 28.(수) ~ 29.(목) / 1박 2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인 원 : 9명(의원 3, 공무원 6)

○ 주요내용

- 「강화군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사업」 현황 청취 및 현장 방문

○ 참석자 명단

의 원			직 원		
연번	직위	성명	연번	직위	성명
1	경제건설위원장	정 우 식	4	전문위원	김 미 옥
			5	의사팀장	김 해 규
2	경제건설위원	이 상 결	6	전문위원 보좌	송 승 현
			7	정책지원관	변 효 선
3	행정복지위원	이 상 우	8	정책지원관	이 충 일
			9	의정홍보	서 정 빈

2. 주요 활동

☐ 「강화군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사업」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 강화군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담당, 담당자 배석

○ 추진배경

-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은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도로가 확·포장 되었음(법정도로와 달리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음)

- 과거 포장된 마을안길은 토지소유자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도로로 기부한 토지를 점유하는 사례 발생
- 지적공부상 불일치 등 소유권 주장으로 도로폐쇄 및 원상회복, 토지보상 요구 등 지속적인 지역갈등과 민원분쟁 초래
- 도로의 지하에는 대부분 상수도관, 가스관, 하수관로 등 지중매설물이 지나가고 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 마을안길과 관련하여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지속 발생(실제 소송 패소사례 다수 있음)

○ 보상 절차

- 보상 접수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읍·면) → 현장 조사(소관부서) → 보상 대상 선정 → 지적측량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 협의 통보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추진 실적

[강화군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사업]

- 사업내용 : 도로 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
- 대 상 : 강화군 일원 마을안길 및 법정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
- 추진실적
 - 2019. 1.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 기본계획 수립
 - 연차별 보상내역

(2024. 1월 기준)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비(백만원)	36,000	4,000	5,000	7,000	9,000	9,000	2,000
	법정 60억 비법정 300억	법정 10억 비법정 30억	법정 10억 비법정 40억	법정 10억 비법정 60억	법정 10억 비법정 80억	법정 10억 비법정 80억	법정 10억 비법정 10억
보상건수(건)	2,130	300	350	450	460	570	
보상면적(㎡)	158,000	20,000	30,000	32,000	40,000	36,000	

※ 2023년 보상신청 종료(현재 2023년 기접수분에 대한 마지막 보상 작업 진행 중)

○ 질의 답변

질 의	답 변
2024년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실무적으로는 소액으로라도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나 지방교부세 삭감 등 가용예산 부족으로 신규 사업 진행이 어려우며 전년도 접수분에 대한 마무리 보상 작업 진행 중임
올해까지 토지 보상율은 얼마나 되는지?	비법정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전체 현황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보상율은 파악할 수 없으나, 총 2,700건의 신청 중 2,130건 보상을 완료하였음
사업 진행 시 우선순위가 있는지?	지하에 상·하수관로가 매립되어 있다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마을안길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막다른 길이나 사방이 폐쇄된 도로는 후순위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음
토지 보상 시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는 없는지?	토지 보상가에 대하여 재감정 의뢰가 2% 비율로 들어옴, 해당 민원의 경우는 감정평가기관과 협상하도록 권고하거나 소송으로 적정금액을 다툼 후 보상을 진행토록 하고 있음
사유지의 경우 도로 재포장시 동의를 받는지?	원칙적으로 사유지의 경우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분쟁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선순위로 토지 매수를 권유함 이때 감정평가액에 대한 평균가를 제시하고 소유주가 이를 거절할 시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가격의 평균가를 고려하여 보상을 진행함
사업 예산 편성 시 법정 근거가 있는지?	조례 등 법정 근거는 없음 다만, 수혜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목이 논이나 답인 경우 전체 필지에 대한 측량을 진행하는지?	도로 포장선을 근거로 포장된 토지에 대해서만 측량 후 보상하고 있음 만약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경우 잔여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포장선 밖의 토지라 하더라도 매수를 하고 있긴 함. 잔여지 보상에 대한 규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됨
지목은 답이지만 현행 도로인 경우 실제 감정가는 도로의 감정가가 나오므로 소유주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 강화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목이 논·답일 경우 도로로 보고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있음
사업 진행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 마무리 단계인 올해만 보더라도 하루에 민원 문의가 5~6통 오고 있음 사업 초기에는 업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함



□ 사업 대상지 방문

○ 위 치 :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63-16번지 일원

○ 토지를 관통하여 마을안길이 개설된 현장 방문 및 민원 처리절차 청취



3. 벤치마킹 소감

○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마을안길 폐쇄, 원상복구 요구, 지하 매설물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보상을 위한 소송 제기 등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우리 군 도로과에서는 2024년도 비법정도로(마을안길) 전수조사 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관내 비법정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

에 있으며, 울주군의회에서도 비법정도로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자 「강화군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사업」 벤치마킹을 추진하게 되었음

- 강화군은 군정시책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130건(158,000㎡)의 마을안길 편입토지를 보상하였으며, 당해 년도는 가용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전년도 기 신청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올해로써 사업을 종료한다고 함
- 강화군의 경우 민원 남발과 업무 과중의 우려로 토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수혜성 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전수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고 실제 사업이 종료되어가는 단계로 현재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방향과는 거리감이 있으나, 군정 시책 사업의 특성상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온 점, 5년간 축적된 보상 사례 등을 참고할 가치는 있어 보임
- 울주군의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 제정과 이에 따른 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사례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함

[부 록 3] 5분 자유 발언

제000회 울주군의회의 임시회 제0차 본회의(본회의장)
2024. 0. 00.(0) 10:00

5분 자유발언

울주군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울 주 군 의 회

(0 0 0 의원)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000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0000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000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비법정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을 뜻합니다.

사회통념상
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도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통행하다 보니 길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하도록
누군가는 자신의 땅을
통행로로 허락하여 길이 된 곳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도로를 현황도로,
또는“비법정도로”라고 말합니다.

비법정도로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서울연구원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울주군에도 전 지역에 걸쳐
이러한 비법정도로가 매우 많고
관련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등의 경우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도로교통법」 제68조,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토지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재산을 주장하며
도로 폐쇄, 통행료 부과 등을 요구하여

비법정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간에
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우리 울주군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군민들이 상당기간
통행에 매우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비법정도로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포장, 정비,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을
매년 건의하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주들로부터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매수 청구 등의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는
유사한 분쟁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정도로의 전수조사 등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기적 매입계획과 업무 매뉴얼을 포함한
비법정도로 종합 정비·관리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법정도로를 도로로 고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로인해 발생할 수많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매수청구 등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수반될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도로로 고시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비법정도로는 주택가의 생활도로, 마을진입로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종합 정비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마을 지역 주민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 편의와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늘려 작은마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마을 진입 도로”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10가구 이상 집단 취락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을과 구·군도나 면도(面道), 이도(理道) 및 농도(農道)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작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3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정비”란 작은마을 진입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② 도로에는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3조(도로의 노선 지정·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 외에 마을주민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작은마을 진입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도로정비 시행계획) 군수는 도로의 연계성, 재원, 주민편의 등을 고

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의 정비
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의 계획 시행을 위해 도로의 수요 및 현황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